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22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최형두 · 이현승 · 서지영
김기웅 · 김상훈 · 진종오
신성범 · 박충권 · 김태호
백종현 · 윤영석 · 엄태영
김장겸 · 이상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관한 관리가 부실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하위법령에 규정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 나.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를 국외 이전으로 보도록 함(안 제28조의8제1항).
- 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29조 각 호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중 “제28조의9”를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로, “중지”를 “및 국외 이전 중지”로 한다.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및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인정보”를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개인정보”로 한다.

제29조 중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 수립
2. 제1호에 따라 접근 권한이 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조치
4.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 등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u>중지</u> 명령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u>및 국외 이전 중지</u> -----
7. ~ 16. (생략)	7.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를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개인정보</u> 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① ----- ----- <u>경우</u> <u>및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를</u> ----- ----- ----- ----- ----- ----- <u>보호</u> <u>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개인정보</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9조(안전조치의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1.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 수립
2. 제1호에 따라 접근 권한이 변경·말소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조치
4.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 등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